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1659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담당변호사 박창익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재숙, 김채영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부터 2024. 11.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8,82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영어 학습교재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경북 구미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영어교재 및 강의 운용 시스템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사용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¹⁾ 피고에게 원고의 영어교재인 'E'(제1~12권), 'F'(제1~12권)(이하 '이 사건 각 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교재를 피고 학원의 영어 학습교재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제1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Program 사용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가 원고의 Program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따른 상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Program 사용 허가)

- ② Program 사용 허가는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교재와 강의 운용 시스템 등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원고는 피고의 원 운영에 사용할 주교재, 부교재, 교사지침서 등의 원고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Program을 피고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



제3조(의무와 책임)

- ① 피고는 원고가 영어교육에 관한 한 '국내에서의 독보적 존재'임을 인정하며, 원 업계의 상관행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와 신뢰도 및 동일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피고는 원고의 Program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한 강의 운용 시스템(커리큘럼, 강의시간, Syllabus 운용방법, 교수방법, 강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강좌 개설이나 Program을 도입할 수 없다. 강의운용 시스템은 원고가 별도로 통보한다.
- ④ 피고는 원고가 정한 강의 운용 시스템(커리큘럼, 강의시간, Syllabus 운용방법, 강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해지가 통보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 속한 모든 지적재산권인 교사용 자료, 학생용 교재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4조(교사의 채용과 지원)

- ① 피고가 고용하는 모든 교사는 원고가 시행하는 교사 교육(Teacher's Training Program)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어긋나거나 부족한 교사를 채용했을 시 원고는 해당 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과 갱신)

- ① 본 계약은 2016. 1. 15.부터 2017. 2. 28.까지 유효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의 종료 무렵인 2017. 2. 27.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교재 사용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부당행위 금지)

- ① 피고는 원고의 명예와 신뢰도 및 동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원고가 지정한 교육과정 및 강의 운용 시스템을 준수하여 원고가 제공한 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다른 교재와의 병행사용 금지),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외에서 교재 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재 등 공급의 중단 및 해지)

1)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일은 2016. 1. 15.로 되어 있으나(갑 제4호증의 1), 원고는 2015.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1주일 전 서면으로 예고한 후 피고에 대한 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공급하는 교재 등을 피고가 2개월 이상 주문을 하지 않을 시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의 종료 무렵인 2018. 3. 1.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제12조 제2항 중 "원고가 제공한 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다른 교재와의 병행사용 금지)"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9.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교재를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2.경 피고가 이 사건 각 교재를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0.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 5. 초순경 피고 학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교재('E') 41권을 복제하여 학원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약3255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 교재 45권을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교재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면서 교재 겉표지 및 속표지에 표시된 원고의



상호, 성명 등을 삭제하고 겹표지 하단에 피고 학원명인 'D'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교재에 관한 성명표시권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68,829,990원(=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 58,829,990원 +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설령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고의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기간 중 이 사건 각 교재 이외의 타사 영어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제1 계약 제3조 제1항, 이 사건 제2 계약 제12조 제1항의 '원고의 명예와 신뢰도 및 동일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위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교재를 공급하여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에서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공급한 교재의 대금을 뺀 11,62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피고의 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임).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고가 2019. 5. 초순경 피고 학원에서 이 사건 각 교재('E') 41권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고의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교재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교재 45권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41권을 초과하여 무단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위 가)항의 침해행위와 별도로, 피고가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 복제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매월 수강생 수만큼 구매하였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에서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공급한 교재의 대금을 뺀 11,62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가)항의 침해행위와 별도로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2017. 12.경부터 피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경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각 교재 무단 복제 사실을 제보한 교사와의 녹취서(갑 제13호증의 1, 2)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위 교사는 피고가 무단 복제한 이 사건 각 교재의 권수 및 무단 복제한 시기에 관하여 "권수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두 권은 아니에요.", "제가 입사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였고, 피고가



무단 복제한 이 사건 각 교재를 몇 명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명수를 셀 수는 없고", "제 기억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둘은 아니에요, 전혀."라고 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가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 매월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원고는 2019. 12.경 위 교사의 제보로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교재('E') 41권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일부 학원생들의 재시험을 위한 복습용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각 교재 41권 무단 복제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는 내용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교재 1권당 수강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수강생 수만큼의 이 사건 각 교재를 주문했어야 하나, 피고가 2017. 11.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강의에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만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학원의 모든 수강생들이 1개월마다 이 사건 각 교재 1권을 전부 학습하여 새로운 교재를 필요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교재 이외에도 H, I 등에서 타사의 영어교재를 구매하여 강의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의 위 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각 교재 주문량이 같은 기간 동안 추산한 피고 학원 수강생 수의 합계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강의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각 교재 중 'E'의 가격이 1권당 2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교재 중 'E' 41권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1,107,000원(= 41권 × 27,000원) 상당의 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위 1,1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교재 중 'E' 41권을 무단 복제하면서 교재 겉표지에 표시된 원고 상호인 'C'를 삭제하고 피고 학원명인 'D'를 표시하였고, 'Written by A', 'Copyright ©2001 by C all rights reserved'라는 문구가 표시된 속표지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교재에 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원고는 오랜 기간 영어 학습교재 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영어학원을 상대로 강의 운용 시스템, 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각 교재를 공급하였는바,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교재는 해당 업계에서 원고의 경력, 업적 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수강생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면서 위 교재에 표시된 원고의 상호, 성명 등을 삭제하고 피고 학원명을 표시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② 다만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교재의 권수는 41권에 불과하고(피고는 위 41권 중 실제로 2권만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복제한 교재의 제공 대상도 경북 구미시 소재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로 한정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제2 계약의 해지사유[제13조 제1항 가) 참조]를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면서 원고에게 소량의 교재만을 주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교재의 무단 복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07,000원(= (= 복제



권 침해로 인한 손해 1,107,000원 +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기간 중 이 사건 각 교재 이외의 타사 영어교재를 구매하여 강의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계약 제3조 제1항, 이 사건 제2 계약 제12조 제1항은 '원고의 명예와 신뢰도 및 동일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교재 이외의 타사 영어교재를 피고 학원의 강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명예와 신뢰도 및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제1 계약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의 강의 운용 시스템(커리큘럼, 강의시간, Syllabus 운용방법, 교수 방법, 강의내용)을 준수하고 별도의 강좌 개설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 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원고의 교재 이외의 타사 영어교재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도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7. 2. 27. '교재 사용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제2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면서 제12조 제2항에 '원고가 제공한 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다른 교재와의 병행사용 금지)'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 계약이 2018. 3. 1. 갱신된 이후부터는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에 ㉠ 이 사건 제1 계약 당시에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던 점, ㉡ 위 2017. 2. 27. 체결된 계약서는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에 사용한 계약서(갑 제14호증의 1, 2 참조)의 내용과 동일한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2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학원은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지 않은 규모(정원 최대 63명)의 학원으로, 학기 중에는 주로 내신 대비 목적으로 학교 기출문제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교재 제공 이외에 피고의 학원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7. 2. 27. 체결된 이 사건 제2 계약에 타사 영어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각 교재만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2

판사 조호연

판사 김수현